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6. 21(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박경립, 박언곤, 이상필, 장석하, 정명섭,
최성은, 홍승재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 팔영산 탐방지원센터 증축	공개
2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건립)	공개
3	서울 동관왕묘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개
4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주변 축사증축	공개
5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개
6	괴산 원풍리 마에이불병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7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주변 승탑 건립	공개
8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정비	공개
9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허가사항 변경)	공개
10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11	서산 용현리 마에여래삼존상 주변 석축 등 정비	공개
12	익산 승림사 보광전 주변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신축	공개
13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일주문 신축	공개
14	영천 청제비 주변 공장 증축(2차)	공개
15	영천 승렬당 주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허가사항 변경)	공개
16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A 신축(2차)	공개
17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B 신축(2차)	공개
18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예절관 건립(2차)	공개
19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 설치(2차)	공개
20	대구 동화사 대응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4차)	공개
21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 선방 및 요사채 신축(허가사항 변경)	공개
22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백련암 보수(허가사항 변경)	공개

【검토사항】		
23	사직단 정문 지정명칭 변경	공개
24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지정명칭 변경	공개
【보고사항】		
25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26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송례문 주변 홍보탑 설치 - 여수 흥국사 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 신축(허가사항 변경) -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창고신축(허가사항 변경)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 부산 범어사 대웅전 주변 사천왕문 복원 허가기간 연장 -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주변 상가주택 신축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안동 임청각 주변 나들길 조성 - 안동 석빙고 주변 농지개량 공사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6-001

1.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 팔영산 탐방지원센터 증축

가. 제안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에 팔영산 탐방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에 팔영산 탐방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상국립공원사무소
- (2) 대상문화재 : 고흥 능가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번지
 - 지정일 : 2001. 02.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81-2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180m
 - 사업내용 : 팔영산 탐방지원센터 및 매표소 증축
 - 대지면적 : 3,588㎡
 - 건립동수 : 2동(탐방지원센터, 매표소)
 - 건물 구조 및 높이 : 가설 컨테이너, 3.4m

- 동별 개요

	건물명	동수	면적	비고
기존건물	사무소	1동	112.17m ²	
	화장실	1동	90.36m ²	
	관리사	1동	10.39m ²	
증축건물	탐방지원센터	1동	32m ²	증축
	매표소	1동	9m ²	증축

라. 지방자치단체(고흥군) 의견

- 적합.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고흥 능가사 사역에서 약 180m 이격된 부지에 팔영산 탐방지원센터를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팔영산 국립공원 주차장 내에 위치하며, 사찰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임.
- 신청건물은 공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부지가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므로 신청건물은 가설 컨테이너 형태보다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2.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에 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과 3구역(4층 이하), 4구역(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양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219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 인접
 - 사업내용 : 주택재개발 사업(공동주택 건립)
 - 부지면적 : 35,039㎡
 - 건축개요
 - 용적율 : 242.5%, 건폐율 : 20%, 건립세대 : 637세대
 - 건립면적 : 아파트시설 25,672.5㎡, 경비실 1,555.8㎡, 지하주차장 23,389.9㎡,

근린생활시설 500m² 등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동수 및 층수 : 8개동, 6층 및 23층 ~ 30층

라. 검토의견

- 본건은 중초사지 주변에 주택재개발(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중초사지는 전면에 작은 천이 흐르고 앞뒤로 산을 끼고 있어 지형은 잘 살아있는 상황이나 주변이 도심화 되면서 4층, 5층 정도의 많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안은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녹지공간과 통경축을 확보하였으나 당간지주와 가까운 거리에 27층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유유산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안양시에서 유유산업 부지를 매입하고 발굴 조사하여 건물지들이 출토된 상황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아파트 사업계획 규모가 크므로 재검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3. 서울 동관왕묘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23m, 7층 이하)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뉴코아임대(주)
-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38-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송인동 217번지 19호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52m이격
 - 사업내용 : 주상복합건물 신축
 - 부지면적 : 951.5㎡
 - 건축면적(연면적) : 564.32㎡(7,707.45㎡)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 및 높이 : 지상 12층(옥탑1층 별도), 40m

라. 지방자치단체 의견(종로구)

- 동관왕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동관왕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52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2층, 높이 40m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안으로, 주변에는 4층, 5층 정도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동관왕묘 주변이 도시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나, 1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4.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주변 축사증축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보물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주변에 축사시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영암군 소재 보물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주변에 축사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산85
 - 지정일 : 2001. 04.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영암군 서호면 쌍풍리 1348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401m
 - 사업내용 : 축사증축
 - 부지면적 : 2,919.2㎡
 - 건축면적 : 금차 337.05㎡(기존 1,260㎡, 합계 1,597.05㎡)
 - 건축구조 : 강파이프 구조
 - 건물높이 : 7.6m

라. 지방자치단체(영암군) 의견

- 400여m 떨어져 있으며, 암각 매향명과는 반대편 산쪽에 위치하고 있고, 차폐되어 있어 건축물을 증축하여도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없음.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영암 엄길리 암각 매향명에서 약 401m 이격된 부지에 축사를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매향명이 있는 산의 북쪽에 위치하며, 문화재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신청건물은 기존 60m 길이의 축사에 약 17m를 증축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멀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5.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1.19) 검토 : 가결
 - 관보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30일간('12.02.13~'12.03.13)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나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성북동 229-9
 - 지정일 : 1963. 01. 21.
- (3) 보호구역 조정 내용
 - 당초 보호구역 : 4필지 532.7㎡
 - 변경 보호구역 : 27필지 11,042.7㎡ (증 23필지, 10,510㎡)
- (4) 신청사유
 - 도로 상에 위치한 문화재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해소를 위해 서쪽의 민가구역과 동쪽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필요
 - 확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추진

라. 현지조사의견(2012.06.13)

-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은 현재 보호구역이 협소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서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구역의 신청범위 또한 당간지주와 읍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의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보호구역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조사

(단위 :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계			10,880	10,510		
1	나주시 성북동	108-2	대	284	284	○○○	나주시 성북동
2	"	1385-8	도	193	193	나주시	
3	"	1385-9	도	133	133	"	
4	"	1385-10	답	1,592	1,592	○○○	금천면 오강리
5	"	1385-11	답	2,002	2,002	○○○	금천면 오강리
6	"	1385-13	답	643	643	나주시	
7	"	1385-14	답	149	149	○○○	나주시 남내동
8	"	1385-15	답	35	35	나주시	
9	"	1385-1	답	884	884	○○○	나주시 남내동
10	"	1385-2	답	1,572	1,572	"	"
11	"	1385-3	답	1,174	1,174	○○○	금천면 오강리
12	"	864-1	대	87	87	○○○	나주시 성북동
13	"	864-4	대	301	301	○○○	금천면 오강리
14	"	864-7	대	99	99	○○○	나주시 성북동
15	"	864-3	대	126	126	○○○	나주시 성북동
16	"	862-3	답	38	38	○○○	나주시 남외동
17	"	862-4	답	5	5	"	"
18	"	864-8	대	2	2	○○○	나주시 성북동
19	"	1447	구거	992	622	국	
20	"	4-3	답	52	52	○○○	나주시 남내동
21	"	5-1	대	208	208	○○○	광주 북구 일곡동
22	"	5-4	전	304	304	나주시	
23	"	4-5	답	5	5	"	

6.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괴산군 소재 보물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명좌상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4-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33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6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구조 : 목구조, 목조트러스 위 팔작기와지붕
 - 건축면적(연면적) 75.60㎡
 - 높이 : G.L.에서 용마루까지 7.60m

라.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마애불 전면을 지나가는 지방도 건너편으로 마애불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택으로서 다포양식을 취하고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주택에 맞는 간소한 양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7.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주변 승탑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주변에 승탑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승탑을 건립하는 행위가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국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번지 영국사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1412-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65m 이격
 - 사업내용 : 승탑 1기 건립
 - 목적 : 영국사에 오래 주석한 스님의 승탑을 건립하고자 함.
 - 면적 1.2㎡, 최고높이 2.56m
 - 부지정비 2.2m× 2.2m 자연석 외벌대 기단설치
 - 예산 : 15백만원(자부담)

라.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영국사 원각국사비에서 약 65m 이격된 부지에 사찰에 오랜기간 주석하신 스님의 부도를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사찰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항이고 승탑과 탑비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8.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정비

가. 제안사항

강원 정선군 소재 보물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담장 등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찰 진입부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사찰 내 노후 담장을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선군수
- (2) 대상문화재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 소재지 :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062 (고한리)
 - 지정일 : 1964. 09. 0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062, 정암사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70m 경계
 - ※ 해당지역 일부는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3호) 문화재 구역에 속함
 - 사업내용 : 담장 및 낙석방지책 정비
 - 기존 노후담장 철거 후 한식담장 설치 91.70m, 높이 1.6~1.7m
 - 낙석방지책 126m×2.5m(63경간) 설치 / 아연도금지주, PVC코팅망

라. 검토의견

- 낙석방지책은 주차장 주변 범면에서 낙석의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담장 또한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9.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충북 충주시 소재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주변에 독립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독립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하는 사항이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동 사항은 2011년도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위치 조정)’되어 ‘11.11.21. 조건부로 허가된 사항으로, 공적비 형태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59-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
 - 사업내용 :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구분	당초허가('11.11.21)	변경신청('12.06월)	비고
위치	탑평리59-3번지 (석탑 북동쪽 90m 이격)	좌동	같은위치
길이	10.0m	12.0m	증 2.0m
폭	8.6m	12.0m	증 3.4m
높이	6.15m	6.0m	감 0.15m
재질	화강석	고흥석	-

- 변경신청사유 : 작품재구성으로 인하여 형태 변경

라.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보호구역에서 약 90m 이격된 부지에 독립 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하고자 신청하여 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 형태와 크기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공적비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면적의 변경이 일부 늘지만 크지 않고, 높이는 약간 감소하며, 박물관 주변에 위치하여 박물관이 완충역할을 하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10.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국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이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3구역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되나, 공통사항에 10층 이상 건물 개별심의 조건에 따라 허가신청된 사항임.
 - 동 사항은 2007.04.23 해당부지 내 공동주택 신축을 ‘조건부허가’한 바 있으나, 허가기간 내 준공하지 못하고 설계변경하여 재허가 신청한 사항임
 - 허가조건 :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유구발견 시 재심의 / 외부공간 및 외형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동영디엔씨
- (2) 대상문화재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50번지 2호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10m 이격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신축

구분	'07.04.23 허가규모	'12.06월 금회 신청규모	비고
규모	4동 총 498세대	4동 총 784세대	증 286세대
건축면적	4,993.2m ²	6,114.57m ²	증 1,121.37m ²
연면적	111,086.1m ²	146,947.70m ²	증 35,861.6m ²
최고높이	104.2m(최고 32층)	106.3m(최고 32층)	증 2.1m
구조	RC조, 평슬라브	동일	동일

- 변경신청사유 : 작품재구성으로 인하여 형태 변경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용두사지 철당간 보호구역에서 약 110m 이격된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 3차례 심의결과 허가되었으나 사업여건 상 시굴조사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설계변경 등 건축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당초 허가심의 시 규모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된 만큼 건축규모의 증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발굴조사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청주시장)

- 기존 시굴조사 시 매장유구가 확인됨. 따라서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며, 용두사지 철당간 경관에 저해되지 않아야 함.

(2) 시굴조사 결과 요약

- 조사기관 :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07.10.30~11.15)
- 결과요약
 - 건물지, 석렬유구, 소성유구, 수로 등이 확인되었는데 조선시대 청주읍성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됨.
 - 유구 유물이 확인된 곳에 대해서는 확장 발굴조사 실시필요하며, 보상문제로 진행하지 못한 지역은 추후 발(시)굴조사를 할 필요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건물규모가 커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1.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석축 등 정비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석축 등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남 서산시 소재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석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w

- (1) 신청인 : 서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 등 7필지(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마애여래삼존상 전면 바닥, 축대, 배수로 정비 등
 - 마애삼존불 주변정비
 - 전면바닥 포장 14.79㎡, 바닥 판석(THK 100) 설치 65.98㎡
 - 기존석축 및 배수로 정비 L=9.3m
 - 자연석 석축설치 L=6.8m, H=2.6m
 - 웬스설치 L=10.55m
 - 진입 계단 협소 구역 정비 L=53.86m

- 불이문 해체 보수
 - 불이문 보수(주간 2.1m), 돌담장 쌓기 L=1.5m, H=2m
-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앞 배수로 등 정비
 - 토석담장 설치 12.6m, 석축 설치 14.38m, 배수로 설치 36.35m
- 주차장 주변정비
 - 바닥 포장 1066.08m², 석축 설치 139m, 자연석 경계석 쌓기 36.55m
- 방선암 주변정비
 - 석축 설치 40m

라. 지방자치단체(서산시) 의견

- 현존하는 국내 마애불상중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하는 백제시대 마애여래 삼존상이 국보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문화재 원형 보존을 근간으로 하고 문화재 주변을 보수 정비하여 탐방객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마. 검토의견

- 마애삼존불로 들어가는 초입부의 기존 주차장 부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평소 미륵불 견학 및 방문차량이 다수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주차하는 관계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마애불 주변은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나 마애불 전면 마당과 계단 등이 협소하고, 강우 시 우수가 배수로를 넘어 범람하므로 관람환경 개선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마애불 전면의 흙고화 포장은 마사토다짐으로 변경하고, 협문은 심방목이 드러나도록 조정하며, 방선암 주변은 자연스런 경관 유지를 위하여 석축은 제외하고 차량 주차금지 시설을 설치하며 안내판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정비하되 마애불 광장조성은 제외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2. 익산 송림사 보광전 주변 주변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보물 「익산 송림사 보광전」 주변에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북 익산시 소재 보물 「익산 송림사 보광전」 주변에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 (2) 대상문화재 : 익산 송림사 보광전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건립
 - 대지면적 : 3,484㎡
 - 건축면적 : 182.25㎡(1층 113.4㎡, 2층 68.85㎡)
 - 규모 및 높이 : 정면5칸, 측면3칸, 지상2층, 최고높이 10.5m
 - 구조 및 양식 :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눈썹지붕/ 2층 한식목조, 맞배지붕
 - 주변정비 : 석축, 계단, 배수로 정비

라. 지방자치단체(익산시) 의견

-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체험객에게 사찰의 전통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건축물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전통한옥 방식으로 전통음식문화 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림사 사찰경내가 협소하고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상변경 허가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 승림사는 보광전 측면의 정혜원을 공양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의 우려가 상존하며, 사찰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모와 형태 등이 사찰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규모와 형태 등이 문화재 경관에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3.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일주문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에 일주문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영천시 소재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에 일주문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
- (2) 대상문화재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01-1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10m
 - 사업내용 : 일주문 신축
 - 대지면적 : 3,113m²
 - 주칸 : 4.8m(정면1칸)
 - 양식 : 외1출목, 다포계, 겹처마, 맞배지붕
 - 높이 : 8.07m

라. 지방자치단체(영천시) 의견

- 국보 제14호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으로 개별심의 대상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거조암에서 일주문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사찰 초입부의 주차장 입구에 해당되는 위치임.
- 현재 거조암은 일주문 없이 사찰에 출입하고 있어 사찰의 종교 활동 차원에서 필요하고, 거리도 영산전에서 약 220m로 멀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물의 규모가 크고 양식이 특이하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와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또한, 거조암의 사역이 넓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터파기 시에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4. 영천 청제비 주변 공장 증축(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청제비」 주변에 공장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청제비」 주변에 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경사지붕 12m이하” 및 공통사항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임.
- ※ 2012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3.15) 심의결과 : 부결
 - 청제비에 인접하고 규모가 커서 문화재 경관에 저해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모린스 코퍼레이션
- (2) 대상문화재 : 영천 청제비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도남동 산7-1
 - 지정일 : 1969. 1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도남동 254, 257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80m
 - 사업내용 : 공장증축
 - 대지면적 : 12,851㎡
 - 건축면적 : 6,186.8㎡(증 1,944㎡)

- 건축구조 : 철골조
- 층고 및 높이 : 지상 1층, 11.65m
- 바닥면적

구 분	층 별	기 존(m ²)	증 축(m ²)	이 축(m ²)
공장동(주1)	1층	3,701.2	1,064	-
	2층	285.6	-	-
	계	3,986.8	1,064	-
사무실동(부1)	1층	128	-	128
	2층	128	-	128
	계	256	-	256
창고동(부2)	1층	-	880	-
합 계		4,242.8	1,944	256

라. 지방자치단체(영천시) 의견

- 청제비 제2구역 허용조건(경사지붕 3:10) 불충분 및 청제로부터 300m 이내에서의 증축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영천 청제비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80m 이격된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기존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가 공장지역이라고는 하나 청제비에서 가깝고 규모가 커서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현상변경허용기준내에서 시설을 건립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5. 영천 송렬당 주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송렬당」 주변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영천시 소재 보물 「영천 송렬당」 주변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공통사항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임.
- ※ 2011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09.15) 심의결과 : 원안가결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윤창종합건설
- (2) 대상문화재 : 영천 송렬당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
 - 지정일 : 1970. 07.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성내동 177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280m

○ 사업내용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구분	당초허가내용	변경신청내용	비고
대지면적	1,471m ²	1,499m ²	
건축면적	679.14m ²	854.75m ²	
연면적	5,402.8m ²	6,613.2148m ²	
층수 및 최고높이	지하1층, 지상14층/ 43.2m	지하1층, 지상15층/ 45.55m	
세대규모	아파트 41세대, 오피스텔 10호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5호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라. 지방자치단체(영천군) 의견

- 승렬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공통사항 초과로 문화재청 개별심의 대상임.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승렬당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80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4층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기 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층수를 15층으로 변경하면서 세대수를 늘리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 승렬당과 신청부지 주변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부지는 문화재와 거리가 멀고 측면에 해당되는 위치이나 신청건물의 층수, 세대수 등 변경 내용이 많아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16.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A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 2011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01.20) 심의결과 : 부결
 - 건물 신축을 위하여 주변 지형에 대한 절·성토가 많이 이루어져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산12-1 (SITE A)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12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SITE A)
 - 대지면적 : 671㎡
 - 건축면적(연면적) : 98.16㎡(93.8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5.4m

라. 지방자치단체(칠곡군) 의견

- 원지형보존지역에서 신축코자하는 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층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상 변경허용기준에서 원지형보존구역에 해당되며 현재 임야인 상황임.
- 신청부지가 탑의 측면에 해당되고 신청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주변 지형에 대한 절·성토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저해 요소를 많이 완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차폐 식재를 보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6명, 원안가결 1명

17.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B 신축(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 ※ 2011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1.01.20) 심의결과 : 부결
 - 건물 신축을 위하여 주변 지형에 대한 절·성토가 많이 이루어져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산12-1 (SITE B)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12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SITE B)
 - 대지면적 : 718㎡
 - 건축면적(연면적) : 98.16㎡(93.81㎡)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1층, 4.2m

라. 지방자치단체(칠곡군) 의견

- 원지형보존지역에서 신축코자하는 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에서 북동쪽으로 약 120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층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상 변경허용기준에서 원지형보존구역에 해당되며 현재 임야인 상황임.
- 신청부지가 탑의 측면에 해당되고 신청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주변 지형에 대한 절·성토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저해 요소를 많이 완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차폐 식재를 보완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6명, 원안가결 1명

18.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예절관 건립(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에 예절관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에 예절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2012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1.19) 심의결과 : 부결
 - 신청건물은 규모가 크고 높아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
- (2) 대상문화재 : 경주향교 대성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교동 17-1
 - 지정일 : 2011. 12. 02.
- (3) 신청내용(예절관 및 생활관 건립)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교동 18-8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예절관 신축(1동)
 - 면적 54㎡/ 정면4칸,측면2칸/ 납도리/ 홑처마/ 맞배지붕/ 오량가/ 소로수장집
 - 생활관 신축(2동)

- 면적 43.2m²/ 정면5칸,측면1칸/ 납도리/ 홀처마/ 맞배지붕/ 삼량가/ 민도리집
- 협문 신축(2동)
- 주칸 : 1.8m/ 납도리/ 홀처마/ 맞배지붕/ 민도리집
- 주변정비
- 창고철거, 수목제거(은행나무 7주, 감나무 2주), 차면담장 설치(L:12.5m, H:1.2m)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경주향교 대성전 문화재보호구역내로 기 불허된바 있음.

마. 검토의견

- 전통예절교육 등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절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에는 건물의 규모를 축소하고 분동하여 문화재 경관 저해요소를 많이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장문화재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굴조사를 선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19.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 설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2012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5.17) 심의결과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도리사
- (2) 대상문화재 : 구미 도리사 석탑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도리사
 - 지 정 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도리사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 설치
 - 설치면적 : 계단 좌우 8.4m×15.7m 2식

라. 현지조사의견('12.06.15)

- 본 건은 구미 도리사 경내에 있는 적멸보궁의 전면계단 옆에 문수·보현보살상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경사진 지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
- 보살상의 설치는 사찰의 종교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는 하나, 신청안과 같이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설치되는 상의 크기가 각각 8.4m × 15.7m로 거대하여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태를 석조입상으로 조정하여 사리탑 인근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부결 7명

20.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4차)

가. 제안사항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동구 소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주변 금괴관련 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 ‘12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1.19) 심의결과: 부결
 - 제시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인 동화사의 대웅전의 기단을 굴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공신력있는 탐사기관에서 금괴가 매장되었다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고,
 - 발굴·시공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될 경우 재심의토록 함.
- ※ ‘12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2.16) 심의결과: 보류
 - 발굴이나 시공방법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므로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문화재(동화사 대웅전)의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시공계획서 제출 시 재검토.
- ※ ‘12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3.15) 심의결과: 보류
 - 현지조사(‘12.03.07) 의견에 따라 전기탐사와 자력탐사를 추가조사하여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도학동 35
 - 지정일 : 2008. 04.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대구 동구 도학동 35 (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금괴관련 굴착 및 복구
 - 판석 및 표층제거 : 폭 0.75m, 너비 1.1~1.2m, 깊이 15cm~20cm
 - 위치확인 : 금속탐지기 등 지하매설물 탐지기로 정확한 위치 확인
 - 1단계 굴착 : 폭 0.75m, 너비 1.0m, 깊이 0.8m 인력 굴착(경사 1:0.1)
 - 위치확인 : 금속탐지기와 탐침을 이용하여 위치 재확인
 - 2단계 굴착 : 폭 0.3m, 너비 0.5m, 깊이 0.2m 인력 굴착
 - 복구방법 : 인력, 되메우기 시 10cm씩 복토 후 다짐, 판석 줄눈 시공

(4) 탐사자료 추가제출

- GPR 탐사 (PulseEKKO PRO system) : 이상대 존재
- 전기비저항 탐사 (SuperSting R8/IP system) : 이상대가 나오지 않음
- 자력탐사 (Flux gate gradiometer(FM256)) : 이상대 존재
 - ⇒ 우측기단 끝에서 축선거리 2.5~3.0m 구간, 깊이 1.2~1.7m 사이에 지하매설물 존재

라. 지방자치단체(동구) 의견

- 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배면 서측 기단의 일부를 굴착하고자 신청하여 보류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추가 탐사를 실시하여 재신청하였으며, 추가 탐사 결과 이상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단계별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발굴 및 복구를 시행함.

- 출토물에 대한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21.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 선방 및 요사채 신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에 선방 및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에 선방 및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2) 대상문화재 :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1-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57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의 이격거리 : 약 20m
 - 사업내용 : 선방 및 요사채 신축(건물 배치 및 주변정비 변경)
 - 대지면적 : 3,116㎡→3,424㎡(308㎡증가)
 - 선 방 : 북쪽으로 2.5m 이동
 - 요사채 : 서쪽으로 10.3m, 남쪽으로 6.1m 이동
 - 주변정비 : 석축 및 배수로 설치 내용 변경

라. 지방자치단체(문경시) 의견

- 허가사항변경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에 원로스님들의 수행과 생활공간을 위한 원로선원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배치를 변경하고자 재신청한 사안임.
- 신청부지는 봉암사 중심사역에서 멀리 떨어져 보이지 않는 지역이고, 인근에 지증대사탑비가 위치하고 있으나 작은 능선에 가려져 탑비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배치의 변경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선원 전면의 석축이 높아 탑비의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석축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선원의 전면 석축을 최대한 낮추도록 함.
 - 주변 지형은 최대한 보존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22.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백련암 보수(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백련암을 보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 백련암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2) 대상문화재 :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90-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백련암 보수(부분 해체·보수→전면 해체·보수)
 - 건물보수 : 정면좌측 4개 기둥 드잡이, 지붕 연목이상 해체·보수(안허리곡 기법으로 보수) → 건물 전면 해체보수, 지붕 기존 “一”자형으로 보수

- 내부정비(변경없음)
 - 정칸 방 : 온돌을 재설치하고 건물 배면 외편골뚝 설치,
불단 좌우측 뒤틀마루를 반침으로 보수
 - 좌측 방 : 내부 보수하여 화장실 설치
 - 부엌 : 현대식 부엌으로 보수(아궁이 재사용)
- 주변정비(변경없음)
 - 외편골뚝(600×600×820) 설치
 - 오수합병 정화조 및 배수맨홀 설치
 - 자연석 석축 설치(H : 1m, L : 18m)

라. 지방자치단체(문경시) 의견

- 허가사항 변경허가함이 타당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봉암사 백련암의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항으로 금번에 계획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은 의견에 따라 시행하되 자문에 없는 기초의 재설치는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반이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기초설치는 제외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6-023

23. 사직단 정문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사직단 정문」 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직단 정문」 명칭에 대하여 문헌기록, 관계 전문가 현지 자문회의('12.04.06) 결과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 大門
 -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社稷壇國王親享圖屏風) : 大門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궁능문화재과)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사직동 1-38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직단 정문」을 「사직단 대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라. 검토의견(궁능문화재과)

-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도 대문으로 칭하고 있어서 “정문”을 “대문”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함이 타당
 - 사직서의궤,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의 사직서전도에 대문으로 기록되어 있음

- 관계 전문가 현지 자문회의(2012.04.06) 결과 반영
 - 사직단 정문 명칭변경은 고문헌 사직서전도(사직서의궤,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직단 대문”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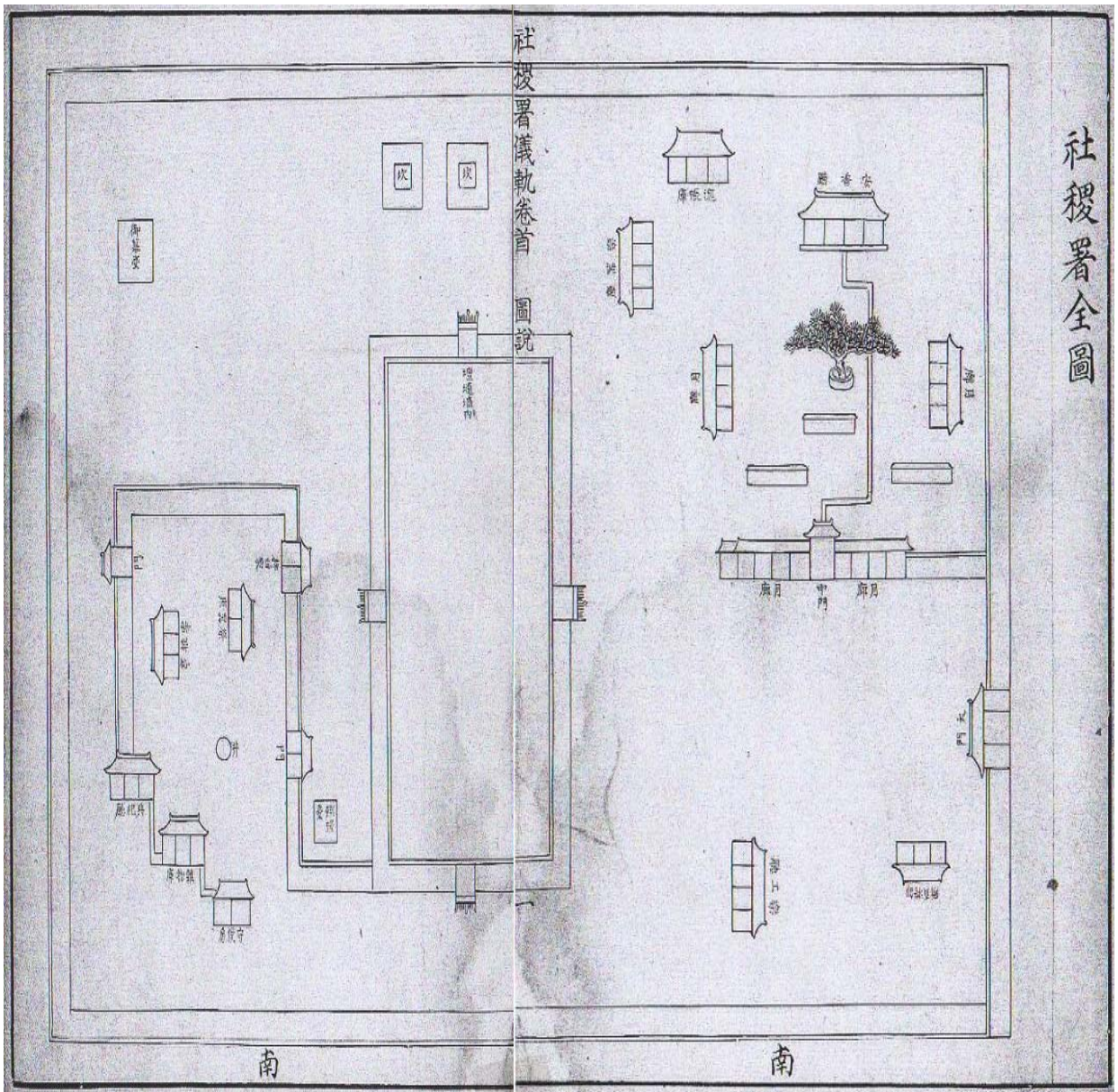
- 참고 1. 고문헌의 대문·정문에 관한 기록 1부.
2. 대문/정문의 사전적 의미 1부. 끝.

< 참고 1 >

고문헌의 대문·정문에 관한 기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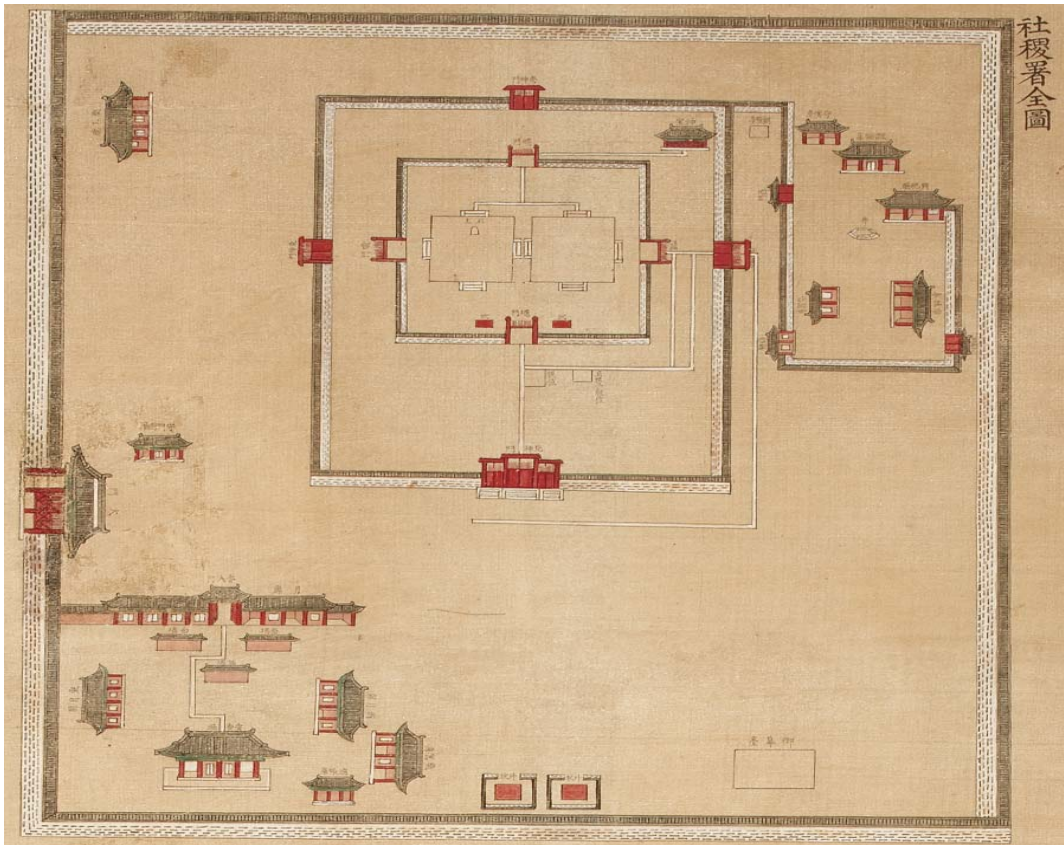
□ 사직서의례

- 사직서전도에 大門으로 기록되어 있음



□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

- 사직서전도에 大門으로 기록되어 있음



○大門
五樑三間東向
○大門外依
關門例設
路臺石以定
界限事
英廟戊辰
下教

者擇送永革雇軍事
英廟丁卯
下教

○部將廳
三間 肅廟壬午新建
英廟壬戌移建於大門傍
部將一員守直正廟丙辰以訓練院僉正以下一員輪直事定式
○守門軍以鄉軍壯實勤幹正

○ 大門 五樑三間東向 大門外依關門例設路臺石以定界限事 英廟戊辰 下教

대문은 5량3칸이며 동향하고 있다. 대문 밖은 꺾문례에 따라 노대석(路臺石)을 설치하여 땅의 경계로 삼도록 英廟무진년[영조24년,1748]에 하교하였다.

○ 部將廳 三間 肅廟壬午新建 英廟壬戌移建於大門傍 部將一員守直正廟丙辰以訓練院僉正以下一員輪直事定式 守門軍以鄉軍壯實勤幹者擇送永革雇軍事英廟丁卯下教

부장청은 3칸이다. 肅廟임오년[숙종28년,1702]에 新建하였다. 英廟임술년[영조 18년, 1742]에 **대문 옆으로** 이건하였다. 부장 일명이 수직한다. 正廟병진년[정조 20년, 1796]에 훈련원 첨정 이하 일원으로 윤직하도록 定式하였다. 수문군은 鄉軍으로서 건장하고 성실하며 재간있는 자를 골라보내어 雇軍을 영구히 혁파하도록 英廟정묘년[영조23년, 1747]에 하교하였다.

- 대문은 5량 3칸이며 동향하고 대문밖은 꺾문례에 따라 노대석(路臺石)을 설치하여 땅의 경계로 삼도록 英廟무진년[영조 24년, 1748]에 하교하였다.
(大門 五樑三間東向 大門外依闕門例設路臺石以定界限事 英廟戊辰 下教)
- 부장청은 3칸이며 肅廟임오년[숙종 28년, 1702]에 新建하고, 英廟임술년[영조 18년, 1742]에 대문 옆으로 이건하였다.
(部將廳 三間 肅廟壬午新建 英廟壬戌 移建於大門傍)

□ 조선왕조실록

- 고종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3월 20일(임술)
하교하기를, “외삼문(外三門)을 옮겨지어서 외대문으로 삼고 2층 문루(門樓)는 그만두고 일체 宗묘사직(宗廟社稷)의 大門의 제도에 의거하여 짓는다면 존경하는 뜻에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보단의 조종문(朝宗門)은 宗묘사직의 문과 같이 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敎曰：“外三門移建，爲外大門，而二層門樓置之。一依宗廟社稷大門爲制，則尊敬之無以加之，大報壇朝宗門，似廟社門矣)

□ 승정원일기

- 영조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6월 12일(계묘)
대가가 사직문 밖에 이르자, 정문을 열어 대가를 맞이하였다. 임금이 그것을 심히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정문은 곧 神門인데 내가 어찌 이 문으로 출입하겠느냐? 조금전 산선(繖扇)등의 의장(儀仗)도 역시 정문을 통해 들어갔느냐?” 수문장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명하기를 의장은 정문을 통해 도로 나와, 다시 동협문을 통해 들어가라! 명하셨다.
☞ 이 때의 정문은 三門 중 가운데 문을 가리킨다.
(大駕至社稷門外，開正門而迎大駕。上甚駭之曰，正門卽神門，予豈由此出入乎？俄者繖扇等儀仗，亦由正門入乎？守門將對曰，然矣。上命儀仗由正門還出，更由東挾入)
- 정조 3년(1779 기해 / 청 건륭(乾隆) 44년) 1월 6일 (신묘)
채홍리가 예조의 말로서 아뢰기를 사직서 대문의 동협문 자물쇠(鎖鑰)가 파상되어 스스로 열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蔡弘履，以禮曹言啓曰，社稷署大門東挾門鎖鑰，至於破傷自開之境)

※ 사직단 대문 문헌기록(승정원일기 발췌)

숙종 30년 7월 22일 (경신) 원본419책/탈초본22책 (9/10)

1704년 康熙(淸/聖祖) 43년

社稷 親祭 때 王世子가 大門 밖에서 降輦 乘輿하는 절차를 宗廟 親祭 때의 예에 따라 마련할 지를 묻는 禮曹의 계

○ 禮曹啓曰, 今此社稷親祭舉動時, 王世子至大門外降輦乘輿之節, 一依宗廟親祭時例, 磨鍊以入乎? 敢稟。傳曰, 依爲之。 以上禮曹謄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 사직친제 거동시에 왕세자가 **대문(大門)**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여(輿)로 타는 절차를, 일체 종묘친제시 예(例)에 따라 마련하여 들일까요? 감히 여쭙니다. 전교하기를, 의해서 해라

영조 원년 7월 21일 (병진) 원본597책/탈초본32책 (13/13)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還宮할 때 金取魯 등이 입시하여 錄囚 때 義禁府에 親臨하는 문제, 李森 등의 疏釋 여부, 典獄署 등의 罪囚 석방 등에 대해 논의함

○ 卯初三刻還宮時, 上乘素輜, 將出**社壇大門**, 下教于政院曰, 社稷齋室, 乃先朝駐蹕之所, 而牆垣頽廢, 不爲修築, 事極未安, 社稷署官員, 從重推考。 ~이하생략~

○ 묘초 삼각에 환궁시에, 上이 소교에 올라 **사단大門**을 나가려 할 때에, 政院에 하교하기를, 사직재실은 先朝의 주필하는 곳(駐蹕之所)인데 장원이 퇴폐하였으나 수축하지 아니하였다. 사안이 극히 편치 못하니, 사직서관원을 종종추고(從重推考)하라

영조 15년 8월 4일 (무인) 원본895책/탈초본49책 (20/21)

1739년 乾隆(淸/高宗) 4년

○ 己未八月初四日卯時。上親行社稷秋享大祭後，還宮學動時，行都承旨李益炆，左承旨任珽，右承旨曹允成，左副承旨閔珽，右副承旨宋徵啓，同副承旨南泰良，記事官李會元，假注書朴珮，記注官魏昌祖，記注官愼龜重隨駕。上出齋室，乘玉轎，至社稷大門外，降轎乘輦。上曰，~이하생략~

○ 上이 재실을 나와, 옥교에 올라, 사직대문 밖에 이르러, 교에서 내려 연(輦)으로 갈아타고 上이 말하길,

영조 18년 8월 1일 (정해) 원본947책/탈초본51책 (15/15)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 上具遠遊冠·絳紗袍，乘輿以出，至仁政門外，通禮跪請降輿乘輦，上降輿乘輦。上曰，兵判進來。兵判朴文秀，以侍衛進伏，上曰，今番陵幸時，訓局隨駕軍兵哨數，依戊申年靖陵行幸時例，舉行，可也。榻教 遂進發至敦化門外侍臣上馬所，駕少駐，教侍臣上馬畢進發，宗親文武百官，鞠躬祇迎。駕至社稷大門外侍臣下馬所，駕少駐，教侍臣下馬，至下輦所，通禮跪請降輦乘輿。上降輦乘輿，由東門以入，入齋殿。百官稟旨就次。

○ 드디어 진발하여 돈화문 밖의 侍臣上馬所에 이르니, 어가가 잠시 멈추었다. 시신으로 하여금 말에 올라 모두 진발하도록 하교하였다. 종친 문무백관이 국궁하여 지영하였다. 어가가 사직대문 밖 시신하마소에 이르자 ,잠시 멈추고 시신들을 말에서 내리게 하였다. 하련소(下輦所)에 이르자, 통례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려 여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上께서 연에서 내려 여에 올라, 東門을 통해 들어가 재전에 드셨다.

영조 18년 9월 16일 (임신) 원본949책/탈초본51책 (12/18)

1742년 乾隆(淸/高宗) 7년

○ 鄭俊一, 以社稷署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署之有守門部將, 蓋出於尊事體禁雜人之意, 而今此部將廳, 在於壁後隱奧之處, 與大門相背, 凡人之出入, 不得看檢。故頃以移建門傍之意, 報請該曹, 而不卽舉行。莫重祭享之所, 使門闕不嚴, 誠甚未安, 令該曹急速改建, 俾爲尊重享祀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준일이 사직서관원과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본서에 수문부장이 있음은 대개 일의 체모(體貌)를 존중하고 잡인을 금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장청은 벽 뒤 은오(隱奧 깊숙함)한 곳에 있어 大門과는 서로 등지어 범인(凡人)의 출입을 간검(看檢)할 수 없습니다....

영조 30년 11월 20일 (을미) 원본1113책/탈초본61책 (19/32)

1754년 乾隆(淸/高宗) 19년

○ 李裕身, 以社稷署官員, 以都提調意達曰, 社稷乃是淸禁重地, 不可使雜人任意出入, 而日前無賴漢輩, 見發於投錢禁吏, 逃避冒入於大門之內。事之可駭, 莫此爲甚。當該守門部將, 不能禁斷之罪, 令攸司處之。當日入直守僕軍卒等, 亦令秋曹科治, 以懲日後之弊, 何如? 令曰, 覽所達, 事極驚駭。當該部將, 令攸司從重勘處, 守僕軍士, 秋曹科治事, 依達

○ 이유신이 사직서관원과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사직은 곧 청금중지(淸禁重地)라서 잡인을 임의로 출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무뢰배들이 투전금리(投錢禁吏)에게 발각돼 도망하여 大門의 안으로 함부로 들어왔습니다.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당해 수문부장이 그들의 죄를 금단하지 못했으므로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를 처치하게 하소서.....

정조 3년 1월 6일 (신묘) 원본1433책/탈초본79책 (17/30)

1779년 乾隆(淸/高宗) 44년

○ 蔡弘履, 以禮曹言啓曰, **社稷署大門**東挾門鎖鑰, 至於破傷自開之境, 而本署官員, 趁不報本曹, 事極可駭。其鎖鑰爲先令該曹卽速改備, 本署當該郎廳, 不可無論罪之道, 而本曹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傳曰, 拿處。

○ 채홍리가 예조의 말로서 아뢰기를 **사직서 대문**의 동협문 자물쇠(鎖鑰)가 파상되어 스스로 열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서 관원이 본조에 보고하지 않아 일이 극히 놀랍습니다.....

정조 15년 1월 5일 (경진) 원본1685책/탈초본89책 (19/19)

1791년 乾隆(淸/高宗) 56년

○ 辛亥正月初五日辰時, 上詣社稷, 祈穀親祭入侍時, 行都承旨洪文泳, 左承旨徐滢修, 右承旨尹行任, 左副承旨洪仁浩, 右副承旨李敏采, 同副承旨柳文養, 記事官李海隣, 假注書趙台榮, 記事官洪樂游·徐有聞, 一提學吳載純, 二提學鄭民始, 檢校直提學李秉模, 檢校直閣鄭東浚, 直閣徐榮輔, 待教沈象奎, 以次隨駕, 上具遠遊冠, 絳紗袍, 乘輿出協陽門, 降輿乘輦, 藥房提調李秉模進前奏曰, 王大妃殿進御湯劑, 今日更爲煎入乎? 上曰, 王大妃殿進御人蔘養胃湯, 依前方, 自今日限五貼更爲煎入, 出榻教 駕出進善門, 教宣傳官徐有和等曰, 出宮後駕後喧聒, 專由閣臣承旨輩, 爭先騎馬, 以致下隸之紛挐, 今番則爾等各別摘奸, 隨現捉納, 可也。駕出敦化門, 詣鐘閣前路。教文養曰, 貢市民輩, 如或待令, 使之召入, 文養承命召入。上曰, 爾等善爲過歲乎? 貢市民齊奏曰, 猥蒙天地之恩, 得以安業好過矣。上曰, 如有爲弊之可以仰陳者, 俾納原情, 可也。文養承命出分付, 駕詣社稷大門外, 降輦乘輿, 詣壇門外降輿, 步詣大次。~이하생략~

○ 어가가 **사직대문** 밖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여에 올라, 단문 밖에 이르자 여에서 내려 대차(大次)로 걸어서 나아가셨다.

정조 15년 12월 30일 (경오) 원본1697책/탈초본90책 (17/17)

1791년 乾隆(淸/高宗) 56년

○ 十二月三十日午時, 上詣社稷, 祈穀大祭舉動入侍時, 行都承旨洪明浩, 左承旨李敏采, 右承旨李義鳳, 左副承旨申耆, 右副承旨李思祚, 同副承旨趙鎭宅, 假注書金履載·沈能迪, 記注官金良倜·承膺祚, 檢校直閣李晚秀·徐榮輔, 以次隨駕。上具遠遊冠·絳紗袍, 乘輿出萬安門, 至仁政門外, 降輿乘輦。命應製入格儒生進前, 儒生以次進伏。上命晚秀·榮輔, 各給科作刊印冊子一件, 及歲饌標紙。上教耆曰, 每儒生五人, 使院隸一名, 出給歲饌, 入格中, 有故不參者, 自成均館, 出給其家, 可也。仍命儒生退出。大駕進發, 到校洞前路, 命書傳教曰, 路傍, 見其孫, 飭亦施, 前判書吳載純敍用, 不可一敍一否, 前判書徐浩修, 亦爲敍用, 仍令該曹口傳付軍職。出駕前下教 詣社稷大門外, 降輦乘輿, 入大門。 ~이하생략~

○ 사직대문 밖에 이르자, 연에서 내려 여에 올라 **대문**으로 들어가셨다.

정조 18년 1월 2일 (경인) 원본1725책/탈초본91책 (25/25)

1794년 乾隆(淸/高宗) 59년

○ 甲寅正月初二日午時, 上詣社稷。祈穀親祭舉動入侍時, 行都承旨鄭大容, 左承旨徐榮輔, 右承旨李勉兢, ~ 이하중략 ~ 上曰, 貢市人外, 觀光小民, 亦皆善過歲乎? 兵判勞問以來。民始等, 傳布下教訖, 回奏曰, 貢市人觀光諸人, 皆云俱蒙聖澤, 各得其樂矣。上曰, 所懷中弊瘼之可釐正者, 草記稟處, 可也。仍命退, 諸臣前詣至社稷大門。降輦陞輿, 至東神門外, 降輿, 步入北神門, 詣壇上, 奉審尊所祭器訖, 出就北神門外板位, 行省牲禮記, 還御齋殿。上曰, 舉措多顛錯, 右通禮僉漢人汰去, 口傳擇差, 當該銓官推考。出榻教 上曰, 兵刑換房。出榻教 諸臣以次權退。

○ 모든 신하가 앞서 **사직대문**에 이르렀다. 연에서 내려 여로 올라 동신문 밖에 이르자, 여에서 내려 걸어서 북신문 안으로 들어가셨다

※ 사직단 대문 문헌 기록(조선왕조실록 발췌)

고종 11권, 11년(1874 갑술 / 청 동치(同治) 13년) 3월 20일(임술) 1번째기사
만동묘의 도안을 보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의논하다

~생략~

박규수가 아뢰기를,

“그 도식을 보니 진덕문이 한쪽 모퉁이에 있고 정면 지대에 있지 않은 것은 지세(地勢)에 구애받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진덕이라는 칭호는 본래 서원의 문인 듯한데 이제 만약 정면으로 옮겨 지으면 묘(廟)의 외대문(外大門)이 되니, ‘만동묘’라는 석 자는 정묘조(正廟祖)의 어필(御筆)로 본래 어느 문에 걸려 있었는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이 편액을 외대문에 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외삼문(外三門)을 옮겨지어서 외대문으로 삼고 2층 문루(門樓)는 그만두고 일체 **종묘사직(宗廟社稷)의大門의 제도**에 의거하여 짓는다면 존경하는 뜻에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보단의 조종문(朝宗門)은 종묘사직의 문과 같이 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이유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니, 박규수가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존경하는 뜻에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 이하생략 ~

”珪壽曰：“見其圖式，進德門在於一隅，不在正面之地，未知地勢有拘而然矣。且號稱進德，似本是書院之門，今若移建於正面，以爲廟之外大門，而萬東廟三字，正廟朝御筆也。本揭於何門，臣未能知矣。今以此扁，揭之外大門，恐好矣。”教曰：“外三門移建，爲外大門，而二層門樓置之。一依宗廟社稷大門爲制，則尊敬之義，無以加之，大報壇朝宗門，似廟社門矣。”裕元曰：“聖教至當矣。”珪壽曰：“如此則尊敬之義，無以加之，聖教至當矣。”

~ 이하생략 ~

광해 29권, 2년(1610 경술 / 명 만력(萬曆) 38년) 5월 22일(병인) 2번째기사
병조에서 폐문후 궁궐에 들어온 이약과 신경직의 추고를 청하니 허가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사직의 대문을 이미 닫은 후에 도총도사 이약(李淪)과 선전관 신경직(申景禧)이 내금
위의 박윤중(朴允宗)을 잡아보내면서 고하기를 ‘문을 닫은 후에 문살이 부서진 곳으로
몰래 들어 왔다.’ 하였습니다. 임금의 수레가 친히 임하시어 출입이 매우 엄한 곳을 함
부로 문 틈으로 몰래 들어왔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유사로 하여금 추고하여 죄를 다스
리게 하소서.”하였는데, 윤허하니 잡아다 추고하라고 전교하였다.

兵曹啓曰：“社稷大門已閉後，都總都事李淪、宣傳官申景禧，捉送內禁衛朴允宗，告之曰：
‘閉門之後，自外從門箭破折處，偷入’云。大駕親臨，門禁極嚴之地，擅入門隙，極爲駭愕。
令攸司推考治罪。”傳曰：“允，推考傳旨入啓。”傳曰：“拿推。”

※ 사직단 정문 문헌기록(승정원일기 발췌)

정조 2년 12월 2일 (무오) 원본1432책/탈초본79책 (14/15)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 戊戌十二月初二日辰時, **上詣社稷**。舉動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行右承旨李鎮衡, 左副承旨蔡弘履,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申應顯, 記事官柳孟養, 假注書柳文養, 記事官李信祐·鄭東浚, 以次陪從訖。上具翼善冠·袞龍袍, 乘輿出仁和門, 至乘輿所。左通禮, 跪請降輿乘輦。國榮曰, 俄者社稷都提調送言, 以社署守僕輩, 專昧祭禮, 莫重享祀, 有難舉行。自前太廟守僕, 有推移以用之例, 今亦依此爲之則似好云, 故敢達矣。上曰, 太廟守僕之不得借用, 既有先朝受教, 以太常事知守僕推移, 好矣。左通禮啓請大駕進發。大駕出敦化門。上曰, 禮房承旨, 馳詣宗廟永禧殿·景慕宮, 奉審以來。駕前下教 **大駕入社稷正門**, 仍入齋室, 隨駕軍兵解嚴, 取稟。上曰, 知道。 ~ 이하생략 ~

○ 대가가 사직정문으로 들어와 곧 채실로 들어갔다. 어가를 따르는 군병들이 해엄(解嚴)을 취품(取稟)하니 上이 “알겠다” 하셨다.

☞ 이 때 정문은 三門 중 가운데 문을 가리킨다.

정조 10년 1월 5일 (경술) 원본1593책/탈초본85책 (6/6)

1786년 乾隆(淸/高宗) 51년

○ 丙午正月初五日辰時, **上詣社稷**, 親行祈穀祭入侍時, 行都承旨金尙集, 行左承旨朴祐源, 右承旨柳誼, 左副承旨安聖彬, 右副承旨徐龍輔, 同副承旨李家煥, 記事官金孝建, 假注書金洛淳, 記注官金健修, 記事官金鳳顯, 閣臣吳載純·李秉模·徐鼎修·李崑秀·尹行任隨駕。上具遠遊冠·絳紗袍, 乘輿由貳極門出宮, 至仁政門外降輿乘輦, 執圭由敦化門出, 侍臣百官, 皆以朝服上馬隨駕。仍命書傳教曰, 侍衛軍兵毛具。至鍾街命駐輦, 召見貢市人陳瘼, 命貢市堂上及戶房承旨, 捧上所懷及說弊辭語。上曰, 各市人所懷, 戶房一一捧上, 待還宮後入覽, 可也。上教貢市人等曰, 每歲歲首, 必駐輦於此, 廣詢弊瘼, 卽是仰體先朝聖意也。予臨御十載, 無一爲惠於民, 而只詢弊瘼, 汝等其各悉陳無隱, 可也。市人等, 俯伏承教訖, 或陳所懷,

或陳無弊。上命進發。上曰，有司堂上，齋殿入侍，上至社稷正門外，釋圭乘輿入大次，旋詣省器位省器，詣省牲位省牲，還御齋殿。 ~이하생략~

○ 상께서 출발을 명하셨습니다. 상께서 이르기를 유사(有司)당상은 재전에 입시하라 하셨습니다. 상께서 사직정문 밖에 이르자, 규(圭)를 풀고 여에 올라 대차로 들어갔다. 곧 성기위(省器位)로 나아가 제기를 살피고, 성생위에 나아가 희생을 살핀 후에, 다시 재전으로 드셨습니다.

영조 38년 6월 12일 (계묘) 원본1207책/탈초본67책 (3/4)

1762년 乾隆(淸/高宗) 27년

○ 壬午六月十二日辰時，社稷學動入待時，行都承旨曹命采，左承旨兪彥民，右承旨李邦曄，右副承旨李堉，同副承旨李彥衡，記事官金和中，假注書安寬濟，記事官李致中·洪檢陪從。上具遠遊冠·絳紗袍，出崇賢門，南壇祈雨祭香祝，親傳于獻官。鄭翬良隨至建明門而還，至崇賢門外乘輿。藥房都提調申晚，提調尹汲，醫官金履亨入侍，進理中建功湯。上進御後，上曰，理中建功湯一貼，晚後更爲煎入。出榻教 大駕至夜晝峴前路。上曰，作門內各別禁草。出駕前下教 上曰，百官步從，喧嘩特甚，騎曹郎廳記過。出傳教 上曰，飭已行，河南君堉敍用，復授摠管，令該曹，卽爲口傳付君職。出傳教 上曰，入社稷後當先爲奉審壇上，仍省牲·省器，知悉。大駕至琮琛橋前路。上曰，前都憲李得宗，今見祇迎於路左，敍用復授前職，牌招隨駕。出傳教 大駕至社稷門外，開正門而迎大駕。上甚駭之曰，正門卽神門，予豈由此出入乎？俄者繖扇等儀仗，亦由正門入乎？守門將對曰，然矣。上命儀仗由正門還出，更由東挾入， ~이하생략~

○ 대가가 사직문 밖에 이르자, 정문을 열어 대가를 맞이하였다. 임금이 그것을 심히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정문은 곧 神門인데 내가 어찌 이 문으로 출입하겠느냐? 조금 전 산선(繖扇)등의 의장(儀仗)도 역시 정문을 통해 들어갔느냐?” 수문장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명하기를 의장은 정문을 통해 나와, 다시 동협문을 통해 들어가라! 명하셨습니다.

☞ 이 때의 정문은 三門 중 가운데 문을 가리킨다.

순조 29년 12월 30일 (경인) 원본2248책/탈초본114책 (30/30)

1829년 道光(淸/宣宗) 9년

○ 己丑十二月三十日辰時，王世子詣社稷祈穀大祭動輿入對時，行都承旨鄭基善，行左承旨李奎鉉，右承旨鄭知容，左副承旨徐英淳，假注書金學性，記事官李肯愚·金大根，原任提學金履喬，原任直提學金鏞，原任直閣徐俊輔，直提學徐熹淳，檢校直閣徐萬淳，檢校待教金興根以次陪立。時至，相禮跪白外備，王世子具遠遊冠·絳紗袍，乘輿出摛文院，由敦化東挾門出。相禮贊請降輿乘輦，王世子降輿乘輦。相禮贊請執圭，王世子執圭，進發至舊光化門前。王世子降輦步過，仍爲乘輦，至社稷正門外，王世子降輦乘輿，由西挾門入齋室。少頃，王世子乘輿出齋室，至北門降輿，步由西門入。 ~이하생략~

○ 상예찬이 집규(執圭)를 청하였다. 왕세자가 집규하여 출발하니, 옛 광화문 앞에 이르렀다. 왕세자가 연에서 내려 걸어 그곳을 지나서 곧 연에 올랐다. 사직정문 밖에 이르러, 왕세자가 연에서 내려 여에 올랐다. 서협문을 통해 재실에 들었다. 조금 후에 왕세자가 여에 올라 재실을 나와, 북문에 이르자 여에서 내려, 걸어서 서문을 통해 들어갔다.

영조 3년 1월 4일 (신묘) 원본630책/탈초본34책 (22/22)

1727년 雍正(淸/世宗) 5년

俞崇 등이 입시하여 社稷 祈穀親祭를 거행함

○ 丁未正月初四日，四更一點，社稷祈穀親祭時，上將詣祭壇，上曰，爲民祈禱，予將步往。政院將欲微稟之際，上已臨齋室門。都承旨俞崇，請乘輦。上不從，上具遠遊冠·黑團領·玉帶，自齋室步出。禮儀使黃璿，導上，入自正門，詣板位，南面立。 ~이하생략~

○ 사직기곡친제시에 상께서 제단에 나아가려 하면서 말하기를 “백성을 위한 기도 이기에, 나는 걸어가겠다.” (승)정원이 미품(微稟)하려는 사이, 상이 이미 재실문에 임하셨다. 도승지 유송이 교(輦)에 오르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원유관 흑단령 옥대를 갖추고 재실에서 걸어 나오셨다. 예의사 황선이 상을 이끌어 정문으로 들어가 판위에 이르자, 南面하고 서셨다.

정조 2년 12월 2일 (무오) 원본1432책/탈초본79책 (15/15)

1778년 乾隆(淸/高宗) 43년

○ 戊戌十二月初二日四更一點, 上詣社稷。親行臘享大祭入侍時, 行都承旨洪國榮, 行左承旨鄭民始, 行右承旨李鎭衡, 左副承旨蔡弘履, 右副承旨徐有防, 同副承旨申應顯, 記事官柳孟養, 假注書柳文養, 記事官李信祐·鄭東浚, 以次侍立訖。上具冕服, 出大次, 禮儀使導, 至西門外。禮儀使跪請執圭, 國榮進圭, 上執圭, 入正門, 詣版位南向立。 ~이하생략~

○ 상이 면복을 갖추고 대차에서 나오자, 예의사가 이끌어 서문 밖에 이르렀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집규(執圭)를 청하였다. 홍국영이 규(圭)를 바치자, 상이 규를 잡고 정문으로 들어가, 판위에 나아가서南向하고 서셨다

정조 21년 4월 29일 (기해) 원본1775책/탈초본94책 (30/31)

1797년 嘉慶(淸/仁宗) 2년

○ 兵曹, 宗廟親享時正門·東門·西門守門, 兵曹郎廳各一員, 永寧殿正門·東門守門, 摠府郎廳各一員, 攝行時宗廟正門, 兵曹郎廳一員, 東門·西門守門, 護軍, 永寧殿正門, 摠府郎廳一員, 東門守門, 護軍以上五衛將·忠翊·忠壯將中各一員, 社稷親享時正門·東門·西門守門, 兵曹郎廳各一員, 攝行時正門, 兵曹郎廳一員, 東門·西門守門, 護軍·五衛將·忠壯·忠翊將中各一員, ~이하생략~

○ 사직친향시에는, 정문 동문 서문을 수문(守門)하고 병조 낭청 각 1원을 배치한다. 섭행시에는, 정문에 병조낭청 1원, 동문·서문 수문은 호군 오위장 총장 충익장 중 각 1원을 배치한다.

고종 6년 1월 9일 (신사) 원본2735책/탈초본129책 (26/26)

1869년 同治(淸/穆宗) 8년

○ 己巳正月初九日子時, **大駕詣社稷**。 祈穀大祭親行入侍時, 行都承旨鄭基會, 行左承旨金炳淵, 行右承旨吳夏泳, 左副承旨王庭揚, 右副承旨鄭顯裕, 同副承旨申獻求, 史官缺直提學趙成夏, 檢校直提學李載元·金炳地·趙寧夏·李載冕·閔升鎬, 檢校直閣李淳翼·李喬翼·李承純·李世用, 檢校待教徐相翊·鄭範朝·趙慶鎬, 玉堂缺以次侍立。 **時至, 通禮跪啓請出次, 上具冕旒冠·玄衮·碧玉帶, 出齋室。 通禮跪啓請乘輿, 上乘輿, 至西門外, 上降輿。 禮儀使啓請執圭, 基會進圭, 上執圭, 入自正門, 詣版位南向立。** ~ 이하생략 ~

○ 때가 이르자, 통례가 꿇어앉아 출차(出次)를 계청하였다. 상이 면류관, 현곤, 벽옥대를 갖추고 재실을 나왔다. 통례가 꿇어앉아 여에 오를 것을 계청하였다. 상이 여에 올라 서문 밖에 이르자, 여에서 내렸다. 예의사가 집규(執圭)를 계청하였다. 정기회가 규를 바치자, 상께서 규를 잡고 **정문**으로 들어가, 판위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셨다

숙종 46년 2월 30일 (정묘) 원본521책/탈초본28책 (7/8)

1720년 康熙(淸/聖祖) 59년

社稷壇 北神門 등을 奉審하러 갈 本曹의 인원이 없으므로 承政院에서 稟處하게 할 것을 청하는 禮曹의 달

○ **禮曹達曰, 卽接社稷署所報, 則壇北神門三間, 顛仆破碎, 而東西邊兩柱塗灰之境, 腐傷折倒, 正門兩柱及礎石, 亦爲拔倒云, 事甚驚駭。** 臣曹當與本署提調, 待明朝眼同奉審, 而本署都提調領中樞府事李濡身病, 提調知敦寧府事閔鎮遠, 方在議藥廳, 俱不得進去, 令政院稟處, 何如? 令曰, 依。 已上禮曹臚錄

○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사직서에서 보고하는 바를 접하니, 단의 북신문 3칸이 넘어져 파쇄되고, 동서변의 양기둥과 회를 바른 경계가 썩어서 절도(折倒)되고, **정문의 양기둥과 초석**이 또한 뽑혀 넘어졌다 하옵니다....

☞ 이 때의 정문은 서신문이나, 북신문의 가운데 문을 말함.

< 참고 2 >

대문 / 정문의 사전적(辭典的) 의미

- 대문(大門):
- ▶ 큰 문. 집의 정문. 앞대문 [민중엣센스국어사전 2011]
 - ▶ 집 바깥으로 통하게 하기 위해 만든 커다란 문 [Daum 국어사전]
 - ▶ 큰 문. 집의 정문 [동아새국어사전 1990]
 - ▶ 큰 문. 주로, 한 집의 주가 되는 출입문을 이른다. [Naver 국어사전]

- 정문(正門):
- ▶ 1. 건물의 정면(正面)에 있는 주가 되는 문
 - 2. 대궐이나 관아의 삼문(三門) 중 가운데에 있는 문. 큰문 [민중엣센스 국어사전 2011]

 - ▶ 1. 건물의 정면에 있어 주로 드나드는 문.
 - 2. 대궐이나 관아의 삼문(三門) 중 가운데의 문. [Daum 국어사전]

 - ▶ 1. 건물의 정면에 있는 문. 본문(本門) ↔ 후문(後門)
 - 2. 삼문(三門)의 가운데의 문. ↔ 측문(側門) [동아새국어사전 1990]

 - ▶ 1. 건물의 정면에 있는 주가 되는 출입문. 본문(本門).
 - 2. <건설> 대궐이나 관아의 삼문(三門) 중 가운데에 있는 문 [Naver 국어사전]

24.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지정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지정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해체보수 공사 중 건물의 명칭을 새롭게 밝힐 수 있는 내목도리 묵서 및 종도리 상량문 발견에 따른 지정명칭 변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내목도리 묵서 : 順治拾柒年己亥五月十三日上樑…(중략)…盖瓦成造彌陀殿兼化主道人尙崙(1659년 5월 13일 상량, 미타전)
 - 종도리 상량문 : 地藏殿上樑文…(중략)…乾隆二十六年辛巳春三月十三日午時上樑(1761년 3월 13일 상량, 지장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북지장사
- (2) 대상문화재 :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 소재지 : 대구 동구 도학동 620
 - 지정일 : 1984. 11. 30.
- (3) 신청내용
 -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을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으로 명칭 변경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의 의견이 달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대구 복지장사 지장전”으로 명칭 변경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조건부가결 7명

의 건 서

□ 자문개요

- 지 정 별 :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 자문내용 :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지정 명칭 변경

□ 검토의견

동화사보다 8년 먼저인 신라 소지왕 7년(485년)에 극달화상이 창건한 사찰로서 과거 쌍탑식 가람으로 구성된 배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2009년 발견된 목서에서 1659년 ‘미타전’으로 건립.
- 건륭(乾隆) 26년 신사(1741) 상량문에서는 ‘지장전’으로 기록하고 있음.

상기의 기록과 현재 사찰에서 대웅전을 복원하고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것은 인정됨.

따라서 현재 전에 모신 주불인 아미타불을 고려할 때는 1659년 전의 명칭인 ‘미타전’도 좋을 것으로 보이나 1741년 보수 또는 중수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 추게 되었으므로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이라는 명칭이 기록과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2012. 3.

문화재위원 ○○○

의견서

□ 자문개요

- 지정별 :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 자문내용 :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지정 명칭 변경

□ 검토의견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내부 불단에는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그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두고 있다.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사찰에서는 미타전, 극락전, 무량수전 등으로 부른다. 따라서 북지장사 대웅전은 원래 전형적인 ‘아미타전’ 또는 ‘극락전’이었다고 생각한다.

대구 북지장사는 원래의 대웅전이 전소된 후 현재의 건물을 대웅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웅전 뒤에서 발견된 ‘석조지장보살좌상(1988년 5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을 대웅전 불단의 주불인 아미타불 좌측에 함께 봉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전각의 명칭은 전각 내부에 봉안된 주불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법당 내에는 대웅전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주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보살로서 봉안되어 있다.

지금은 없지만 북지장사 대웅전이 전소된 후 사찰에서 극락전으로 사용하던 곳을 부득이 대웅전으로 바꾸어 사용해 왔다면 전각 내부에 봉안된 주불인 아미타불의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도 원래의 이름대로 ‘미타불’이나 ‘극락전’으로 이름을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09년 1월 해체보수공사 진행 중 내목도리에서 발견된 목서에 1659년 상량 당시 ‘미타전’이라는 기록까지 발견되었으니 이를 근거로 현재의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을 주불의 이름을 따서 ‘대구 북지장사 미타전’ 또는 ‘대구 북지장사 극락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1. 9. 2

문화재전문위원 ○○○

의 건 서

□ 개 요

- 지 정 별 :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 자문내용 :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지정 명칭 변경

□ 검토의견

현 대웅전은 약 100년의 시기차를 두고 미타전과 지장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소실된 대웅전지의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출토되어 대웅전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므로 차제에 현 대웅전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하나의 건물에서 두 가지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명칭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북지장사 대웅전 해체 보수공사 과정에서 현 대웅전의 명칭과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록이 확인되었는데, 내목도리에서 목서가 발견되었고, 종도리에서 상량문이 출토되었다. 내목도리 목서는 “順治拾柒年己亥五月十三日上樑…(중략)…盖瓦成造彌陀殿 兼化主道人尙崑”이라 기록되어 있어 1659년 5월 13일에 상량하였으며, 명칭은 미타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도리 출토 상량문을 보면 “地藏殿上樑文…(중략)…乾隆二十六年辛巳春三月十三日午時上樑”이라 기록되어 있어 1761년 3월 13일에 상량하였고, 명칭은 지장전임을 알 수 있다.

이 두가지 명칭과 관련된 기록 등의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타전 관련 근거로는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들 수 있다. 현재 대웅전에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좌측에 대세지보살과 우측에 관음보살을 협시불로 봉안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각의 명칭은 불상에 따라 정해지며,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불전은 ‘미타전’ 혹은 ‘극락전’으로 명명하고 있다.

지장전 관련근거는 첫째로 대웅전 정면 기단 위의 ‘지장사유공인영세불망비(地藏寺有功人永世不忘碑)’가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사명이 원래 북지장사가 아니고 지장사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기타 사찰의 연혁이나 공역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법당에 모신 석조지장보살좌상인데, 이 불상은 약 60여년전 대웅전 뒤편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이 폭우로 지표에 노출되어 옮겨 놓은 것으로 불상의 크기가 작아 현 대웅전의 주불이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현 대웅전은 불망비와 석조지장보살좌상 등 관련 유물과 종도리 상량문 등을 볼 때, 1761년부터 이후 어느 시기에 지장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 대웅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반의 정방형 건물로 공포는 다포계양식(多包系樣式)의 내·외4출목(內·外四出目)으로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어 미타전으로 명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물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종도리 출토 상량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1761년 지장전으로 중수한 건물이고, ‘지장사유공인영세불망비(地藏寺有功人永世不忘碑)’의 기록과 석조지장보살좌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장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명칭은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에서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12. 6. 18.

문화재전문위원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6-025

25.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제508호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의 고시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재고시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지난 2012년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 회의('12.05.17)에서 심의된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도면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재고시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보물 제508호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삼교읍 신리 산16번지
- (2)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고시일 '12.05.31)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p>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3) 정정 내용

- 도면표기 오류 정정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

2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서울 숭례문」 주변 홍보탑 설치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9건		
서울 숭례문 (국보 제1호)	서울 중구 (보훈청장)	○ 호국보훈의 달 홍보탑 설치 - 위치 : 숭례문 전면 도로 건너 교통섬 내 - 규격 : 가로, 세로 각 18m 높이 11m - 설치기간 : 2012.5.31 ~ 6.30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5.30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보물 제396호)	전남 여수 (흥국사주지)	○ 템플스테이 신축 허가사항 변경 - 건물 면적 및 높이 등 건물규모의 변경 없이 주변 배치와 내부 평면, 외부입면, 석축 및 담장에 대한 변경임.	변경 허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5.30
강화 정수사 법당 (보물 제161호)	인천 강화 (○○○)	○ 창고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변경사항 건물 높이(3.3m) 및 배치 변경 지붕형태 변경(경사지붕에서 평지붕) 출입문 위치 변경 등	변경 허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6.1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보물 제49호)	전남 나주 (나주시장)	○ 도시계획 도로 개설 - 도로 폭 : 10m(양방향 2차로) - 개설길이 : 224m - 위치 : 나주 경찰서 ~ 나주여고 간 도시계획 도로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4.27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물 제1461호)	부산 금정구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주지)	○ 사업내용 : 사천왕문 복원 허가 기간 연장 - 건축면적 : 58.9㎡ - 건축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굴도리 7량가, 맞배지붕(중와) - 당초 '11.06.14~'12.06.14 변경 '11.06.14~'12.12.31	변경허가 (변경허가 신청한 안과 같이 시행함..)	'12.06.14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127호)	경북 경주 (참조은영농 조합법인)	○ 상가주택 신축 - 건축면적 : 67.98㎡ - 연면적 : 135.96㎡ - 지상2층, 평지붕, 높이 7.2m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5.31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보물 제498호)	경북 울진 (○○○)	○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건축면적(연면적) : 97.1㎡(78.5㎡) → 82.74㎡(82.74㎡) - 높이 : 지상1층 5.65m→ 4.65m	변경 허가 (변경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6.18
안동 임청각 (보물 제182호)	경북 안동 (안동시장)	○ 나들길 조성 - 데크로드 설치 L=672m · B=1.8m, H=1.2m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6.18
안동 석빙고 (보물 제305호)	경북 안동 (○○○)	○ 농지개량공사 - 토공사 : 절토 1,030㎡, 성토 1,038㎡ - 조경공사 : 줄떼·평떼입힘, 조경석 설치 등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함.)	'12.06.1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